

주말경제

Economy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 내달 11일부터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자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다음달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등 5개 항목은 다음달 11일부터, 20일부터는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3개 항목에 대해 각각 서비스를 시작한다.

부양가족 영수증 내용을 함께 조회하기 위해서는 원천징수의 무자인 회사가 일괄적으로 직원 들로부터 부양가족의 동신청서와 인감증명서를 모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또 부양가족 자신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할 경우 동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도 되고, 부양가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해도 된다.

회사를 통한 일괄신청기간은 다음달 14일까지고 세무서 방문이나 우편을 이용한 신청은 다음달 17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꼼꼼히 챙겨보고 '환급액 늘리기' 성형·스케일링·보약도 공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올해는 미용·성형수술비와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 등이 공제대상 범위에 새로 포함됐다. 반면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 등은 폐지됐다. 올해는 자신이 지출한 만큼 최대한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올해 연말정산 방식은 예년과 비슷하다. 그러나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적지 않아 환급액을 늘리려면 달라지는 점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확대·신설항목
확대·신설되는 항목을 살펴보면 우선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지출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이 의료비 공제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미용성형수술은 물론 보철비용, 스케일링, 모발이식, 비만치료 등도 해당되며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구입 등에 소요된 비용까지 공제 가능하다.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학원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체육도장이나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이 추가 확대됐고, 요건도 최소 월 단위(주 1회 이상) 교습과정까지 인정됐다.

방송통신대학 등 시간제 등록취득시 지급하는 수업료 또한 교육비 공제가 허용됐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학점을 이수하기 위해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에 시간제로 등록해 지급하는 수업료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시 직계존비속 연령 제한을 폐지, 실질적인 공제가 가능해진 것도 달라진 점이다. 이번 개정으로 만 20세 초과 자녀의 혼인, 남 60세(여 55세) 미만 부모님의 장례나 혼인이 발생했을 때에도 사유 당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허용됐다.

아울러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 자녀의 수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해진 점도 변동사항이다. 자녀가 2명일 경우 연 50만원, 3명은 연 150만

취학전 아동 교육비 확대 자녀 3명 150만원 공제도

원, 4명은 연 250만원씩 자녀가 1명 추가될 때마다 100만원씩 늘어난다.

◇일부 축소·폐지 항목
반면 공제에 포함되던 게 일부 축소되거나 폐지된 것도 있어, 납세자들의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다자녀 추가공제가 신설된 대신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됐다. 기존 근로소득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 공제대상자의 인원에 따른 추가공제를 앞으로는 받을 수 없게 됐다.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역시 기존 10만원을 기부했다면 1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부한 액수만큼 10만원만 세액공제 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이 소득

공제 된다. 또 지금까지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 공제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다시 말해 의료비 지출액 중 총 급여액의 3%가 초과된 의료비를 지난해 12월 이후 신용카드를 결제했다면 카드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의 3% 미만이라는 이유로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는 전체 연말정산 신고자의 8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를 결제한 의료비의 카드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총 급여의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 한도(500만원)를 초과해 의료비공제에서 제외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매년 연말정산이 개정되면서 단서조항이 많아지고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 한 항목이라도 더 공제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은 퍼즐 풀기를 하듯 어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전문가들마저 이해하기 어려운 연말정산 세법개정을 앞으로는 단순하고 쉽게 개정해야하며, 무엇보다 국세청 입장이 아닌 납세자의 입장에서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금융권 다양한 연말정산 이벤트 특별금리·사은품·수수료를 인하 등

연말정산 대목을 맞아 금융권이 고객을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

국민은행은 12월 31일까지 '최고 300만원 연말정산 특별보너스 이벤트'를 연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청약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KB실버웰빙연금신탁·KB코리아인택스펀드 등에 신규 가입하는 고객 기존 계좌에 추가 입금을 하는 고객 중 307명을 추첨해 KB기프트카드 등 다양한 경품을 준다. 이 기간 동안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 0.3%포인트의 특별금리도 지급한다.

우리투자증권도 올해 말까지 연

금상품(우리연금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과 장기주택마련상품(장기주택마련펀드·보험) 등 총 5가지 절세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사은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삼성생명도 이달 말까지 이메일을 등록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득공제용 안내장을 우편으로 발송한다. 안내장에는 ▲고객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계약별 금액 ▲상품별 공시이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체크 리스트 등도 동봉한다. 발송 기간동안 받지 못한 고객은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1588-3114)로 신청하면 우편이나



우리투자증권은 증권업계 최초로 원금보전 및 예금자 보호가 되는 '우리 Wm 연금신탁' 상품을 다음달 4일부터 판매한다.

팩스로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연금신탁 상품의 운용수수료도 인하하고 있다. 외환은행이 지난달부터 안정형 연금신탁의 수수료율을 연 1.2%에서 연 0.9%로 0.3%포인트, 채권형의 수수료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주요내용		
	다자녀 추가 공제 신설	자녀 2명까지는 50만원, 3명 이상이면 1명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
	의료비 공제 범위 확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유방확대, 지방흡입, 보톡스, 스케일링 등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 한의원에서 조제한 보약도 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이중공제 금지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이중공제 안 함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확대	지난해까지는 1월 3시간, 주 5일 이상 다니는 학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주 1회 이상만 대내도 공제. 대관도 학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공제
	자녀 및 부모의 혼인, 장례 비용 공제 확대	만 20세 초과 자녀와 60세(여 55세) 미만 부모의 장례나 혼인 시에도 건당 100만원의 소득공제

● 연말정산 유의사항 7계명

-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되는 아래 항목은 주의할 것.
 - 배우자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 : 연봉 7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 기본공제를 이중공제 하는 경우.
 - 부모님 소득공제를 여러 형제가 이중공제 하는 경우.(형제·자매, 사위, 며느리가 공제 받는지 확인 후 반드시 한명만 공제 받아야 함)
 -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부금 허위발행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신설됐고, 200만원 이상 기부금 공제는 특별관리.
- ▲직장은 옮겨도 소득은 남아있다=연도 중 직장을 옮긴 경우에는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현 직장에 제출할 것.
- ▲건강한 한해 보냈다면, 의료비공제는 신경 쓰지 마라=의료비는 연봉의 3% 초과금액에 대해 공제되므로, 3% 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다리품 팔지 말 것.
- ▲면세점 이하 소득자, 다리품 팔 필요 없다=급여가 적거나 올해 입사해 연봉이 면세점인 989만원(4인 가족 1천646만원) 이하인 경우, 영수증을 챙기지 않더라도 매년 세금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다리품 팔지 말 것.
- ▲맞벌이 부부 배우자양쪽 과표 누진구간을 낮춰라=배우자의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경우, 자녀 및 부모님공제를 적절히 나눠 부부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 낮춰야 한다.
- ▲종신보험료가 100만원 초과하면 다른 보험 영수증은 챙길 필요가 없다=안·종신보험·자동차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하나의 영수증이 100만원이 넘으면 다른 영수증은 챙길 필요 없음.
- ▲기부금 공제는 본인 명의만, 한도는 소득금액의 10%임을 기억하자=기부금공제는 본인 명의만 공제되고 한도는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의 10%이므로, 맞벌이부부는 기부할 때 공제받을 사람 명의로 기부하고 한도초과 기부금은 다른쪽 배우자로 몰아주자.

공인중개사 전국수석 합격률 1위

현제 접수중

광주고시학원

227-0000

1271-022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12월 3일 개강

361-8111

520-8111

17 행정고시학원

361-8111

520-8111

시제·제시상을 차려드립니다

떡양산과

061-383-8283